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2 - 2호

신길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변경(안) 공람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18호(2009.08.20.)호로 구역 지정된 신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‘같은 법 시행령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안)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. 본 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2022년 01월 06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22. 01. 06. ~ 2022. 02. 07.(32일간)
2. 공람장소 :
 -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(☎02-2670-4178)
[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, 보건소 건물 6층]
 -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(☎02-832-4113)
[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5(신길동)]

3. 공람내용

가.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조서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변경사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변경	신길제2 재개발 정비사업	신길동 190 번지일대	116,896	증) 17	116,913	·공공청사(지구대)부지 정형화를 위하 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경계에 맞춰 일부 편입

나.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계획 : 공람도서 참조

다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: 공람도서 참조

라.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계획 : 공람도서 참조

마. 기타 : 공람도서 참조

4. 의견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

5. 공람도서 : 게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